
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정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음반·음악영상물제작업, 음반·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경우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것을 30일로 연장하는 내용임(안 제24조제1항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이 화 실)